

1. 住宅供給에 관한 規則中改正令

건설교통부령 제120호 1997. 10. 14

주요골자 및 개정이유

투기과열지구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·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특별공급을 허용하지 아니한 결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기 전에는 민영주택의 특별공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철거민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,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이미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었던 철거민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 요 내 용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중 “주택(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은 제외한다)”을 “주택”으로 하고, 동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없다. 다만,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

무주택세대주인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례)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.

주택회보